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 워크숍

독일통일 문서자료에서 보는 통일준비

일시 2015.1.28(수) 14:00~18:00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발 표
- 독일통일문서자료의 분류, 특징, 성과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 2015 추진방향과 POST 2016 구상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 독일통일문서자료에서 읽는 '통일역량'
박명규 (서울대)

- 토 론
- 아르네 바취 (베를린 자유대)
 - 알렉산더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 김천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이종현 (통일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독일통일 문서자료에서 읽는 통일역량	05
독일통일 정책문서 공유사업	21
독일통일 총서 시리즈 소개	32
〈표 1〉 재무 관련 주제 분류표	24
〈표 2〉 독일통일 관련 문서 수집 현황	25

독일통일 문서자료에서 읽는 통일역량¹⁾

박명규 (서울대 교수, 사회학)

1. 서론

최근 국내외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초 ‘통일은 대박’이란 말로 통일논의를 촉발시킨 후 3월의 드레스덴 선언, 7월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9월 유엔연설에서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표명 등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²⁾ 국내 주요 언론들도 한반도의 미래발전이 분단 극복과 직결되어 있음에 주목하는 특집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특히 통일이 북한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성장을 새롭게 추동할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통일 편익론에 힘을 싣는 새로운 모습도 보인다.³⁾

하지만 통일을 역사 속에서 구현시키는 것은 간단치 않다.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쟁점이어서 한국정부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남북한 간 갈등이 매우 큰 사안이다.⁴⁾ 한국사회 내부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나 태도는 동질적이지 않아서 국민의 일상적 관심은 경제, 복지,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통일에 대한 체감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40% 수준에 머물러 있

1) 이 발표문은 2014. 10. 24~25에 개최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의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저스티스』 제146권 1호(특집호 I, 2015. 2. 간행 예정)에 기고한 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2) 통일부,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참조.

3) 예컨대 이상만 외, 『이제는 통일이다』 (서울: 헤럴드경제, 2014)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와 같은 책자들이 경제신문사에서 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김병연 교수는 남북한 통일 시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로 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매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2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연, 『통일대박 가능하다』, 통일준비위원회 세미나(2014년 11월 20일) 발제문 참조.

4) 최근 북한은 일련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론이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로 규정하고 강한 반감을 표시한 바 있다. 10월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참조.

다.⁵⁾ 통일이라는 과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공유하지 않는 분단국 특유의 현상이므로 주변 국가에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런 만큼 통일의 과정과 목표, 조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지혜가 동원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은 외부의 기회와 내부의 역량이 함께 만나야만 가능한 힘든 과제인 바, 이를 가능케 할 ‘통일역량’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보고 이를 ‘독일통일문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통일역량의 개념화 – 막스 베버 사회이론을 원용하여

통일이란 한반도의 현재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상변경 프로젝트다.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두 정부, 두 체제, 두 사회, 두 시장, 두 지역이 하나로 되는 총체적 변동이 수반되는 역사적 변동이다. 이런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역사상 어느 정치체제도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권력에 합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같은 강압적 수단의 동원 없이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과 ‘비범한’ 리더십, 그리고 ‘비상한’ 열정과 자원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다.

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외교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 통합과 연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인과 포용의 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나 법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적개심을 약화시키고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할 정서적 공감능력도 소중하다. 이처럼 통일역량은 강제적 압력, 소통과 합의, 경제적 지원, 정서적 감동, 법적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힘이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어떤 결정적 국면에서 통일과정으로 향하는 역사적 흐름을 실현해 낼 종합국가역량이라 해도 좋을 터이다.⁶⁾

이런 종합역량의 관점에서 통일역량을 이해할 경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사회

5) 매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의하면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14년의 경우 43%로 나타난다. 통일기대편익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박명규 외, 『2014년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참조.

6)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파워만이 아니라 문화력, 외교력, 정보력, 소통능력, 사회적 통합력 등 소프트파워까지를 포괄하는 스마트 파워가 곧 여기서 말하는 총체적 역량이다.

이론이 큰 도움을 준다. 베버는 합리적 기획, 관료제적 관리, 시장경제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의 중요성, 사회적 소통, 감정의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관점을 제공했다.⁷⁾ 베버의 논의를 통일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면 중요한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인 것의 성격과 그 본연의 기능, 둘째로 시민사회의 소통구조와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낼 역량, 셋째로 법제화를 통한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 등이다. 소명의식 없는 정략적 정치인들의 요란한 구호도, 다양한 개인과 주체들의 견해와 논쟁을 무시하는 주장도, 법체계와 법치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정서적 접근도 모두 문제다. 정치와 사회, 그리고 법의 영역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면서 높은 수준의 통일역량을 만들어내는가가 핵심적인 숙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베버는 정치, 경제, 사회, 법, 문화, 예술 등 전반에 관심을 보였고 이 중 어느 하나의 가치를 절대시하지 않은 다원론자이지만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역할을 특별히 중시했다. 학자에게는 ‘가치중립’을 강조했지만 정치의 장에서는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고 스스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체계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감각으로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⁸⁾ 여기서 ‘단단한 널빤지’란 “복잡다기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뒤엉킨 현실” 또는 “엄혹한 권력정치의 장이자 신념들의 투쟁의 장”을 의미한다.⁹⁾ 목표를 위해 폭력과 강제력이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공간이 곧 정치이며 필요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악마적 힘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베버는 보았다. 특히 베버는 정치본연의 기능이 일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료제적 관리나 행정사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분명한 가치지향성을 내포한 실천으로 보았다. 때로는 설득과 합의로, 때로는 강제력의 행사로, 때로는 악마와의 타협으로,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베버가 그린 정치인의 모습이었다.¹⁰⁾ 베버는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만한 ‘대의’를 갖지 못한 권력추구자, 책임을 지기보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탁하려는 심정윤리자, 그리고 냉철한 균형감각을 갖지 못한 현안몰두자는 결코 제대로 된 정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베버는 또한 근대사회가 탈주술화와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원적 가치의 공존이

7) 베버의 종합적인 사회이론에 대한 개괄적 소개로는 배동인·전성우 외,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6) 참조.

8)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07).

9) 전성우 해제, 위의 책.

10) 김성호, “주객의 자편: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2호 (2003); 공보경, “막스 베버의 정치지도자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권 2호 (2003).

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열정 못지않게 종교인, 예술가, 학자와 기업가, 법률가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제각각 독자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그 자율성과 다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¹⁾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구축해놓은 독특한 이해관계, 상호작용, 문화적 공감대는 한 사회의 기초 질서를 짓는 바탕이 된다. 베버가 보기에 이런 사회적 질서는 한편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생산의 상호성에 기초를 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가치, 공유되는 신뢰 등 공동체적 속성들을 바탕으로 한다.¹²⁾ 베버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자신의 이해로 간주하는 사회세력들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면서 다양성 공존과 함께 자발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했다. 경제적 이익추구, 정치적 권력획득, 사회적 존경이나 명예 중시, 타자를 위한 헌신, 평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이기적 욕망 등이 모두 나름의 동기와 힘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들 간에 절대적인 위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후일 하버마스를 비롯한 독일 사회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회적 의사소통’은 다양한 주체들의 다원적 가치지향을 용인하는 데서 출발한다.¹³⁾ 어느 관점도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권력이나 금력이 다양성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감하는 위에서 소통과 논쟁의 장 자체를 근대의 중요한 체제 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베버는 ‘법’의 힘, 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버는 ‘법’이 근대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과 인간행위의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라고 보았다.¹⁴⁾ ‘합법’이라는 것은 곧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지배의 합리화란 곧 ‘법체계’의 지배이고 그 과정은 법이 하나의 ‘완결적이고 과학적인 운용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체계로 전환되는’ 과정과 병행한다고 보았다. 베버는 ‘법적 지배’의 원칙 속에 어떤 상황도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정당성이 구축되고 보편성을 담보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피력했다. 법은 보편성과 체계성, 형식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 특수성이나 인간적 고려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안정적 질서를 가능케 한다. 동시에 베버는 법의 지배가 가져올 비인격화가 정치를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법의 ‘형식성’과 ‘체계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될 경우 정치가 행정으로, 가치합리성이 절차합리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베버

11)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탈주술화’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서울: 나남, 2002).

12) 루이스 코저 저,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13) 윤진숙,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 『법학논총』 제1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 『의사소통 행위이론』 1, 2 (서울: 나남, 2006).

14) 베버는 근대사회의 전형적인 지배양식을 ‘합법적’ 지배라고 명명했다. 합법적 지배는 그 정당성이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법’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을 의미한다. 상사에 대한 복종이나 명령에 대한 순응이 인격적인 신뢰에 의거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작용하는 법적 권한관계에 의거한다는 것이 합법적 지배의 기본특징이다. 루이스 코저 저,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참조.

가 ‘관료제화’라는 현상에 비판적이었던 것, 사회주의자들의 ‘계획경제’ 구상에 비판적이었던 것, 카리스마 있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도 ‘법 만능주의’가 인간의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적 선택, ‘입법’의 권리, 종교나 예술을 통해 ‘합리’의 세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존중되는 ‘내면’의 세계를 함께 인정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는 합법적 정당성이야말로 근대사회 질서의 근간이 된다고 보았다.

3. 독일 통일역량의 사회적 기초

독일 통일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위한 사전 ‘마스터 플랜’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동독은 물론이고 서독도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서독은 동서냉전 하에서 서방통합정책을 민족재통합보다 우선시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1960년 “자유는 절대적 요구이고 통일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8년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했지만 ‘재통일’이라는 용어를 피했고 동서독 분단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반을 고수했다. 1970년대에는 하나의 독일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민족’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등장했고 ‘통일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포기하고 동독 사람들의 상황개선에만 매달릴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도 했다.¹⁵⁾ 동독은 아예 명시적으로 ‘두 개의 독일’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처럼 정교한 로드맵이나 통일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역사적 전환이 평화적으로 짧은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탈냉전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동독주민의 희망과 욕구를 기민하게 포착함으로써 통일을 결단하고 추진해낸 종합적 역량, 통일실천능력이었다.¹⁶⁾

독일통일의 기반은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동서독의 화해와 협력, 상호신뢰의 증진에서 마련되었다.¹⁷⁾ 서독이 ‘접촉을 통한 변화’를 표방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동독과

15)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제1집 2호 (2009), p.168.

16) 2014년 9월 17일부터 사흘간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한독통일 자문회의’에서 동독 전 수상 로타르 데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를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강조한 바도 이 점이었다. 가능성이 주어진 결정적 시기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은 일차적으로 정치사회적 역량이었다고 한결같이 강조했다. 물론 그 배후에 거대한 독일 마르크의 경제력이 작용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7) 독일통일과 관련한 중요한 저서들이 여럿 출간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eter H. Merk, *German Unification in the European Context*,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의 접촉을 늘리고 교류를 확대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막대한 재정지출도 기꺼이 감당했다.¹⁸⁾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그들이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도 똑같이 보장했다. 동독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돈을 지불하고 서독으로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제도도 시행했고 서베를린으로 오고가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비용도 전담했다. 동독주민의 서독여행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마다 ‘환영금’을 지급했고,¹⁹⁾ 서독의 고등학생들은 동베를린으로 가는 수학여행이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했다. 서독은 동독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민간 영역에서 서독의 기관이나 개인이 동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의 통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 간의 교류나 접촉은 통일 전에 상당 수준으로 확대되었다.²⁰⁾ 1986년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동서독의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민간부문의 교류에서 교회의 역할이 특히 컸으며, 정부는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정책을 뒷받침했다.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삶, 소통과 대화의 제도적 틀, 사회적 토론과 숙고,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동서독 간에도 확장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였던 바탕에는 2차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서독의 선진적인 민주주의 역량이 존재한다. 서독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공존, 소통, 타협하면서 ‘정치’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 연방정부와 개별 주 간의 권력분점,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연정, 법치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유럽연합과 독일의 내적 통합 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발전시켰다. 의견의 다양성과 정치적 통합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와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방정책의 기틀을 닦은 사람은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였고, 통일과정을 지휘한 사람은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 총리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문제를 전담한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상은 자유민주당 출신이었다. 한마디로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은 동독 정책에 관해 정당의 벽을 넘어 공감대를 공유했다.

이런 특징의 하나가 독일 문화외교에서 확인되는 탈동조화(decoupling) 특징이다. 다양한 기관들이 정부의 일상적인 외교정책과 분리되어 일정한 독자성을 지닌 채 다른 국가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개별적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은정 교수는 이러한 ‘행위자의 다원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문화외교와 정치 간의 탈동조화 원칙’이 서독의 공

18) 에곤 바르 저, 박경서·오영옥 옮김,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 (서울: 북로그컴퍼니, 2014).

19) 동독주민들이 서독으로 방문할 때는 ‘환영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불했다. 1인당 30마르크였던 이 환영금은 통일 직전에는 100마르크로 커졌고 1989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수혜자가 됨에 따라 중지되었다.

20) 임흥배 외, 『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공외교 일반의 특징인 동시에, 대 동독 교류정책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²¹⁾ 정치적 관계가 격변하는데도 동서독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일상적 외교정책과 교류정책을 분리하는 탈동조화’에서 찾는 지적²²⁾은 포괄적으로 독일사회의 민주주의 역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독일의 문화외교가 목표로 한 것은 소통과 교류였으며, 이를 수행한 주체들도 괴테 인스티튜트와 같은 문화기관, 훔볼트 재단의 학술지원 프로그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스 자이델 재단, 하인리히 뵐 재단 같은 정치재단 등 다양하였다. 정치재단의 활동은 자칫 이데올로기적 선전이나 정부 홍보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바, 이런 탈동조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 다루는 독일 사회철학의 전통’과 함께 ‘문화역량’ 자체의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전통의 뿌리는 앞서 막스 베버에서 확인되는 다원주의, 문화적 자율성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싶다.

독일정치의 민주성을 담보한 또 하나의 요인은 협정이나 합의를 통해 규범을 창출해내는 능력이었다. 예컨대 동서독 간의 문화교류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도서 교류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와 소통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양한 형태의 협약, 협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능력 때문이었다. 초기에 맺어진 프랑크푸르트 협약, 베를린 협약, 베를린 협정은 말할 것도 없고 프라이카우프 협약과 같은 비공식적인 조치들에 이르기까지 상호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약속의 규범화가 교류와 소통에 크게 기여했다.²³⁾ 이런 정신은 결국 ‘독일민족’의 정체성을 민족감정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공유라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서독은 잠정헌법이란 의미를 지닌 ‘기본법’ 체제를 근거로 동독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로 규정했고 동독주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독일국적’ 보유자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동독인은 언제라도 서독으로 넘어와 국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서독정부는 너무 많은 해외독일인의 유입으로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민족론이 아니라 법적 권리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적용되는 방식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슈테른베르거는 ‘넓은 감정적 민족애를 대신하는 헌법에 자체가 곧 조국’이라고 했고 하버마스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애국주의”를 강조했다.²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

21) 이은정, “디커플링: 독일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21』 제17권 4호 (2014), pp.59~84.

22) 이은정, 위의 글, p.63.

23) 이은정, 위의 글, pp.75~77.

24) 박명규, “민족론과 통일론-독일과의 비교,”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pp.177~184. 참조.

는 헌법에국주의는 1989년 급격한 통일정서가 동독에서부터 출현하였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헌법적 가치의 존중은 결정적 국면에 동독인들로 하여금 서독체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결단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서독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국제적인 외교정책의 추진, 나토체제와의 관계 등을 다루면서 동독과의 관계를 정교하게 고려하는 종합적인 정책판단과 조율능력을 보여주었던 점도 매우 중요하다. 서독은 동독과 여러 형태의 협정과 약속들을 이끌어냄으로써 동서독 관계를 증진시켰고 집권당의 교체에도 이런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했다.

4. 독일통일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일통일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문서들을 정리하는 사업이 통일부와 베를린자유대 한국학연구소 간의 협력으로 진행된 지 수년이 되었다. 그 결과 영역별로 유의미한 문서들이 정리되고 번역되어 참고할 수 있게 되었음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참고할 자료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대상황이나 정치환경이 크게 다른 독일통일의 경험과 사례를 마치 한반도 통일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나 규정집처럼 간주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동시에 독일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종합적 역량, 그 소프트파워의 작동방식을 이 자료집을 통해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런 독해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통일역량 구축의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기획해 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런 자료를 단기간의 정책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려 하기보다 학계 전반에서 한 사회의 문제해결역량, 특히 통일과 통합의 사회적 기반을 확인하는 맥락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이론적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

독일의 통일역량이 가장 빛을 발한 것은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선포하기까지의 1년간이었다. 이 시기는 독일 내부는 물론이고 동유럽 전반에서 혁명과 대전환이 나타나던 불안정한 때였고 통일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다. 이런 불확실한 기회를 통일과정으로 마무리하기까지는 서독의 ‘정치역량’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역량이 그 기반이 되었

다. 콜 수상이 중심이 된 내각과 재무부를 비롯한 유관 행정부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에 필요한 전략적 구상, 정치적 판단, 행정적 조치와 실행을 효과적으로 담당²⁵⁾했다. 당시 수상을 위시하여 약 10명 정도의 고위 정책집행자들이 수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조치를 독일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해 주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래서 독일통일에 대해서 ‘서독 콜 수상의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이었던 통일정책의 추진 탓’이라고까지 말한다.²⁶⁾

이 극적인 변화와 전환의 과정에서 어떤 역량이 발휘되었는지를 읽어내는 데 독일통일 문서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사실 1989년 말에도 통일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했고 서독의 지도부는 1989년 상반기까지도 동독의 상황에 적극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독체제의 민주화와 신 동독 건설을 우선시하는 시각이 더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콜 수상이 내놓았던 10개조 통일조항 역시 즉각적 통일보다는 국가연합의 방식으로 동서독이 당분간 공존하는 형태를 지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 1월 중순 이 ‘국가연합’안은 폐기되고 급속한 통일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이 전환은 당시 여러 논란을 빚었고 최선의 조치였는지에 대한 이견도 없지 않았지만 서독 정치지도자의 ‘과감’한 정책선택이 통일과정을 실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군대의 철수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한 신속한 외교적 노력들이 이어졌고 동독의 정치지도자들과 조율하는 과정들이 중시되었다.

서독은 이런 통일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일차적으로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도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기본법 23조(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과 기본법 적용)와 146조(독일민족을 대표하는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일헌법 제정)가 제시한 서로 다른 헌법적 구상 가운데 어떤 원칙을 따를 것인가를 정리했다. 상당한 찬반양론이 벌어졌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연방 내무부는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법무부는 23조에 의거한 편입안을 내놓았으며 재무부는 법무부안에 찬동했다. 결국 기본법 23조를 기초로 헌법개정 없이 동독의 편입통일을 추진한다는 정부 내부의 합의에 도달했고 이 결정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동독이 1990년 3월 민주선거 이후 이런 방식으로의 통일론을 지지하면서 통일방식은 확정되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이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지고 이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5) 이 시기에 진행된 각 분야별 쟁점, 법제화, 내부결정,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수집, 정리하고 있는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자료집 시리즈 (서울: 통일부, 2011) 및 『독일통일 총서』 1~4권 (서울: 통일부, 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6)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189쪽.

동시에 기본법 23조의 적용이 서독의 일방주의적 흡수통일로 간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23조에 의한 통일방안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것이 동독주민을 ‘식민통치’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서독의 법체계 부여가 ‘승자의 사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시했다.²⁷⁾ 따라서 동독의 자존심과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주면서 상호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 대한 결정은 동독의 자체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을 통해 실현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전반적 과정을 함께 주도한 동독의 데 메지에르 수상 등 정치지도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이들은 동독의 혁명, 체제전환, 편입형식의 통일, 그리고 통일 후 동독재건 구상 등을 짧은 시간에 고려하고 서독지도부와 협의하는 책임을 담당했다.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동서독 간 ‘국가조약’의 형태로 통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실현한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1990년 5월 18일 체결된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 8월 3일 체결된 ‘독일연방하원 1차 전독일선거 조약’, 그리고 8월 31일에 체결된 ‘통일조약’ 등은 통일과정을 법적 정당성 및 정치적 합의의 형식과 연결시키는 고도의 실천이었다. ‘통일조약’이라는 명칭에 합의함으로써 ‘조약’의 형식을 통해 동독 내부의 자율적 논의, 결정, 선택권을 보장했고 통일조약의 발효 역시 양측 입법기관의 2/3 찬성으로 비준이 필요함을 약속했다. 수도를 베를린으로 결정한 것과 전독일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편입 전후 언제 실시되어도 합헌으로 인정한 것 등이 모두 동독을 배려한 조치들이었다. 결국 ‘통일조약’은 8월 22일 동독 인민회의 363명 중 294명 의원 찬성으로 ‘비준’ 되었으며 8월 31일 서독 쇼이블레 연방 내무장관과 동독 크라우제 정무차관이 ‘통일조약’에 서명했다. 그 결과 10월 3일부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유효지역으로 편입될 것을 선언하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이 모두 갈등 없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는 없었다. 특히 동독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혁명적 상황에서 동독의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요구, 즉 과거청산²⁸⁾ 과제는 상당한 긴장을 동반하였고 자칫 유혈사태로 귀결될 수도 있는 쟁점이 되었다. 특히 슈타지(Stasi, 동독 국가보안부) 해체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한 1989년 12월 이후의 갈등은 동독 치하 실증법의 효력 문제와 함께 자칫 통일 과정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감정문제를 수반할 수도 있었다. 결국 “40년간 스탈린주의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방향이 강조되었고 정치적 결단과 협

27) 통일부,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2: 부처, 지방정부연구』 (서울: 통일부, 2011), pp.288~301.

28) 통일부,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1: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pp.338~348.

상을 ‘합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행위들, 즉 조약, 협정, 특례, 입법, 유예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법’의 기능은 매우 중요했지만 좁은 의미에서 ‘서독 법체계의 이식’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정치와 법, 사회협약의 영역을 고려한 입법, 적용, 특례의 차원을 포괄하는 법사회학적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공론구조, 일정한 갈등표출과 조정기제의 역할도 매우 컸다. 통일 과정에서는 정치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이 분출했다. 동서독 주민들 사이만이 아니라 보수 진보 사이, 세대 간, 직종 간, 정치세력 간, 심지어 개개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와 불만들이 쏟아졌다. 일부는 통일과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엄청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소동조차도 통일과정의 일부로 녹아들게 되는 사회적 원리가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토론, 사회적 공간에서의 갈등 관리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 특히 1989년과 1990년 동독의 결정적 국면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상호소통, 자율적 합의절차를 이끌어낸 것은 원탁회의라는 연대조직이었다. 원탁회의는 정치적 지위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사회조직이었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합의와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²⁹⁾ 종합하자면 정치적 역량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매우 중요했고 그런 정치역량이 발휘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오랫동안 서독사회의 틀을 이루었던 민주주의, 소통과 통합의 정신, 시민적 통합역량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5. 한반도의 통일준비와 통일역량

현재의 남북관계는 통일 이전 동서독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우선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교회나 사회단체 같은 민간영역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도 허용되지 않는 고도의 중앙집권사회다. 60년 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권력이 이어진 탓에 정책의 근본적 변화계기가 마련될 여지도 크지 않았다. 소련군이 주둔했던 동독에 비해 북한은 자체 군사력이 과잉비대화한 군사주의 사회여서 현상변화를 억제할 물리력이 충분하다. 동독에는 없었던 강한 핵개발 의지가 있고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교류나 이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보의 소통과

29) 통일부,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1: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pp.19~26.

유동성이 현저하게 낮다. 여기에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자신들의 체제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사회다.

그렇다고 현재의 북한이 불변의 상태는 아니다. 겉으로는 체제가 강고한 듯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시장화가 초래한 생활세계의 변화다.³⁰⁾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일상의 삶이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시장상황을 매개로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 작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장성택의 처형도 북한의 시장화가 분파권력과 결합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없지 않다. 의복이나 쌀과 같은 생필품 시장의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의 거래시장도 커지고 사교육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200만 대를 훨씬 넘는 휴대폰이 보급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도 늘어나 정보유통의 기회도 달라지고 있다. 부분적이지만 탈북자들과의 정보교환도 지속되고 있고 북·중 접경지대를 통한 비공식적 교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하고 인권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내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까운 장래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기구의 물리력이 여전히 강하고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현저히 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일정한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외부의 투자, 경험, 교역이 절실하고 최근 발표한 경제특구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낮은 상호신뢰와 빈약한 교류, 반세기를 넘도록 유지되는 정전체제, 여전한 불신과 적대감정, 미증의 상이한 한반도 전략, 여기에 핵문제의 복잡함까지 얹혀 있으므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이 언제 어떤 형태로 가시화할지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일의 예에서 보듯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통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89년 독일의 상황과 같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1970년대 이래 서독이 강화시켜 온 정치역량, 통합역량, 경제역량과 외교역량에 준하는 종합적 국가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기본적인 역량의 축적이 없이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평화롭고 원만한 통일과정을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많은 불확정 변수, 불안정 요소, 우연한 사건, 심리적인 반응, 국제적 조건 등에 영향을 받는 특이한 과정이므로 창의력, 유연성, 임기응변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0)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선일보 등의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약 60~70%가 장사에 종사한 경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박명규 외, 『북한 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총체적 역량은 정치적 능력, 경제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등의 종합으로 구성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재정적,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고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역량이 곧 통일역량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가 통일역량을 키워주는 것만도 아니다. 통일 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역량과 이를 가능케 할 민주주의의 심화다. 막스 베버가 말한 대로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실천행위이며 다양한 세력과 이해가 부딪치는 갈등의 장이다.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권위와 정책적 일관성, 임기응변적 유연성과 소통하는 지도력을 구축해갈 수 있는 역량이 없이는 통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의 단단함, 의견의 다양함, 환경의 미성숙 등을 극복해 나가려는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통일논의를 정쟁수단, 또는 정치세력의 자산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태도를 벗어나야 하고 대북정책에서는 통일논의를 명분이나 핑계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에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탁월한 정치지도자의 판단력과 집행력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역량들이 준비될 때 어떤 역사적 기회가 통일의 결정적 계기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민주적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제도화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평화통일은 군사적 점령이나 혁명적 조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이 현존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의 충돌, 정치세력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의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고 변화과정을 제도화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법제정을 통한 제도화는 물론이고 잠정적 예외조치, 판례의 재해석, 예외상황의 인정, 정치적 타협, 특별법 제정, 국제법적 명분 등 다양한 법제화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약속과 합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상 북한은 이중적 지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해갈 당사자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상호성,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로서 통일한국의 정당한 구성원이라고 인정하는 정책적 입장이 견고해야만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소통과 토론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민주적 소통기제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지켜본 학자 가운데 한국사회의 이념적 경직성, 토론 부재, 그리고 문화적 배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³¹⁾ 저자의 우려

31) 예컨대 베를린 자유대 박성조 교수는 남북한이 공통가치, 특히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채 통일하면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성조, 『한반도 붕괴』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는 체제논리와 이념이 현저하게 다른 상황에서의 통일은 갈등과 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상 이런 우려는 남북한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남남갈등이 심화되어 내적 폭력성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극복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 역시 통일준비의 중요한 한 요소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가치, 결속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재창조작업이 필요하다. 통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민족재결합’을 이야기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혈통적 속성을 주목하지만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혈통민족으로 통합되거나 통일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이 통합되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내지 않으면 미래의 통일은 어렵다.³²⁾ 통일은 불가피하게 민족담론의 힘을 강화시킬 개연성이 높지만, 그럴수록 통일의 탈민족적 함의, 세계적 의의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통일은 21세기적인 공동체, 즉 국가적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이고 지역적이며 또한 생활세계와 밀착한 다양한 차원에서 공존과 평화, 이해와 포용, 소통과 배려의 정신을 구현해가려는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³³⁾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가 또한 통일의 가능성을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다.

6. 결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감당할 포괄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킬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견인해 내는 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스마트 파워이다.

이 글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사회이론을 참조하여 통일역량의 세 요소를 검토했다. 첫째는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 둘째로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로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 그것이다. 독일통일이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과정도 이 세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즉

32)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33)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헬무트 콜 수상이 주도한 정치적 판단과 효율적 정책결정, 다양한 주장을 용인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인 민주적 시민사회, 그리고 급격한 변혁의 흐름을 헌법과 법률의 틀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역량이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반도의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세 역량을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사적 흐름과 남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도 미래의 가치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적 리더십, 갈등과 이견이 건강하게 소통되고 토론됨으로써 통합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역량, 그리고 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정책과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화 능력을 준비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근본적 현상변경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보경. “막스 베버의 정치지도자론.”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권 2호 (2003).
-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파주: 한울, 2010.
- 김성호. “주객의 저편: 막스 베버에게 있어서 신념과 책임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2호 (2003).
-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 박명규 외. 『북한사회변동 2012-2013: 시장화, 소득분화, 불평등』.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 박성조. 『한반도 붕괴』.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 배동인 · 전성우 외.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염동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윤진숙.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 『법학논총』 제18호,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제1집 2호 (2009).
- 이상만 외. 『이제는 통일이다』. 서울: 헤럴드경제, 2014.
- 이은정. “디커플링: 독일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21』 제17권 4호 (2014).
- 임흥배 외. 『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 통일부.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1: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 통일부.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연구 2: 부처. 지방정부연구』. 서울: 통일부, 2011.
-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4권. 서울: 통일부, 2013.
- 통일부.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 루이스 코저 저. 신용하 ·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탈주술화’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서울: 나남, 2002.
-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2010.
- 에곤 바르 저. 박경서 · 오영욱 역.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 서울: 북로그컴퍼니, 2014.
- 위르겐 하버마스 저. 장춘익 역. 『의사소통 행위이론』 1, 2. 서울: 나남, 2006.
- Peter H. Merkl, German Unification in the European Context,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독일통일 정책문서 공유사업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2010년부터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통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수집”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문서의 총 분량은 독일어본이 총서 번호 36에 약 80권 (각 권 약 400-500 페이지)에 달한다. 2013년부터는 독일어본의 문서를 규합해서 한국어로 독일통일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에 4권 2014년에 5권 그리고 2015년에 6권이 발간될 예정이다. 독일통일총서는 각 권마다 문서 원본이 실린 CD가 포함되어서 독일어 원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문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읽을 수 있다.

프로젝트의 배경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독일 연방 연방정부 가 2010년 10월 1일에 체결한 통일과 관련된 경험과 인적 자원 그리고 문서의 교류에 관한 MOU의 2항 b조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작업이다. 이 협정서 2조 b항에서 양국 정부는 독일 통일과정에 관련된 정부문서와 그 외의 역사적 문서들을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9개월 동안 테스트를 거쳤다. 이를 통해 통일 통합 관련 정책문서를 규합하는 작업이 현재의 조건 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1년부터 장기프로젝트로서 연구책임자 2명 외에 전임연구원 2명 조교 3명이 팀을 이루어서 현재까지 작업해 오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

2010년은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던 해였다. 통일이 실현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독일 통일과정과 관련된 문서들 중에서 한국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문건들 또는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건들을 규합 정리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데에는 독일통일에 관한 한국의 논의가 총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지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통일부에서 2009년에 진행된 한국 내의 독일통일관련 연구작업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되었다.

독일통일 통합과 관련된 정책문서들이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험이 평화통일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통합을 실현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일이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현대 국가로서 체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유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다. 통일 이후 새로운 통합된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통일되기까지의 과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일이 정치적인 과제라면 통합은 뛰어난 행정력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물론 독일의 경험을 한국에 그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통일부와 독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팀 모두 분명히 주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통일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성공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소수의 지식인의 독점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유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보다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인재 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진행

통일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각 기관 그리고 연방주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많다. 그렇게 많은 문서를 여과작업 없이 그대로 전달받았을 경우 그것을 선별정리하는 작업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문서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선별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한 선별과정은 무엇보다 형식적 통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반적인 정책과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으로 포괄되

는 정책들의 경우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정부가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였다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수집의 초기 단계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의 증언과 경험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대 연구팀은 독일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다. 재정과 노동사회분야와 같이 통일부가 한국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독일에서 조사 수집할 분야를 결정해 준 경우도 있다.

문서수집 과정은 대부분 문서고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각 부처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은 대부분의 경우 3년 정도 각 부처에서 보관하다가 그 이후에는 코블렌츠에 있는 문서보관국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문서보관국에 있다고 하여도 그 분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나아가 각 기관의 문서국에 오랫동안 보관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의 문서수집 작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문서를 정리하고 각 문서의 요약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자유대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책문서를 바탕으로 본 주제별 통일문제에 관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책임자들이 담당한다.

한국어로 출간되는 독일통일총서의 경우 2010년부터 수집된 독일어본 문서를 주제별로 규합하고 한국의 전문가가 총서의 서문을 작성하여 발간된다.

프로젝트의 결과물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에 현재 한국에서 접근 가능한 것은 한글본 “독일통일총서” 1권부터 9권까지이다. 2015년에 통일비용과 화폐통합 그리고 신탁청과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보건 사회복지와 노동에 관한 총 6권의 총서가 발간될 것이다.

- 1권. 국방
- 2권. 행정통합
- 3권. 신연방주 특임관
- 4권. 구동독 지역 재건 프로그램 - Aufbau Ost
- 5권. 경찰통합 (베를린 경찰 통합 사례)
- 6권. 과거청산

〈표 1〉 재무 관련 주제 분류표 (한국측 요청)

긴급재정지원	동독의 재정지원 요구	재정지원 요구 규모
		재정지원 요구의 근거
	서독정부의 입장	서독정부 내부의 입장
		동독 수뇌부와의 접촉
화폐통합	화폐통합 결정 배경	화폐통합 결정의 배경
	재무부의 준비	재무부의 준비 과정
		재무부의 준비과정상 주요 고려사항
	주요 행위자의 입장	연방은행의 입장
		경제자문위원회의 입장
	동서독 협상	동독의 입장
		재무부의 입장
		연방은행의 입장
		경제자문위원회의 입장
		기타 행위자의 입장
		최종 결정과정
	화폐교환의 실제	화폐교환의 실질적 전개
화폐교환상의 문제점		
통일비용 조달	통일비용 추산	통일비용의 범주
		통일비용의 규모
	부담의 주체	통일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재무부의 구상
		주체별 통일비용 부담의 규모
	통일비용 조달 합의	서독 각 주들의 입장
		재무부와 각 주체와의 합의도출
조세·재정정책	조세정책	조세정책상의 변화 모색
		항목별 세입 조정
	세출조정	재정안정화
신탁청	동독 신탁청	동독 신탁청의 구성
		동독 신탁청의 활동내역
	신탁청의 활동내역	인민소유 재산 처리의 기준
		재산 처리의 내역
		신탁청 활동의 개선
	신탁청 활동 평가	재무부의 평가
		대안적 활동방향의 모색

〈표 2〉 독일통일 관련 문서 수집 현황

수집 연도	분 야	역 할	독일어본	번역여부
'10 '13	총리실	정책 기본방향 부처간 조정	Bd 01(1989~1990년까지의 과도기) 경제화폐 통합 관련 총리실에서 재무부, 중앙은행, 경제 전문가 등과 주고 받은 문건들	전체번역 (원문,해제)
			Bd 01(1989~1990년까지의 과도기_부록) 1990년 연방예산 추가예산 - 경제개혁을 수반하는 통화동맹 - 콜총리와 모드로 총리의 회담 - 연방주 및 연방결의안 - 최고인민회의 선거법 - 정당 및 기타정치단체 관련법 - 화폐-경제-사회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조약기본원칙에 대한 프로토콜 - 화폐통합과 전환에 대한 규정 - 화폐통합과 경제 및 사회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조약을 위한 회담관련 - 실무보고서 - 독일민주공화국에 주를 구성하기 위한 헌법 12차 통일조약 회담 - 통일조약 체결전 편입성명	전체번역 (원문,해제)
			Bd 05(국가구조의 변화) - 정당시스템 - 사통당(SED) 및 민사당(PDS) 해산 관련문서 - 동독 사민당, 사회주의 연합, 녹색동맹 등 신설정당 관련문서 - 기민련 등 당 합병 관련문서 - 정당자산 - 사통당/민사당 정당 자산 확보를 위한 조치 및 자산 매각, 소유권이전 관련문서 - 주 도입 - 주 도입법, 인민회의의 주 신설 결의, 신연방주 헌법 초안 관련문서 - 수도이전 - 수도 이전 관련 베를린-본 논쟁 - 수도 조약 - 베를린-본 법 - 본 지역을 위한 보상프로젝트 - 수도 재정 지원 조약 등	해제번역 (원문미번역)

'10 '13	총리실	정책 기본방향 부처간 조정	Bd 06(사회적 변화) • 생활-노동현황과 평가 - 동독 이주민, 연방주의 인구변동, 50세 이상 주민의 상황 - 200%이상 소득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 2006년 독일의 물가, 소득, 노동비용 - 2007년 각 주별 건축용 토지의 구매가 - 세대 간 관계와 연대협약 • 대응방안과 행동 권고 - 고령화되는 사회가 각 개인과 정치에 주는 과제 - 브란덴부르크 주의 인구 통계상의 변동에 대한 감정서 - 독일의 고령화에 대한 제안 • 아동과 청소년 - 구동독의 아동-청소년 지원의 전환 -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독일 아동 청소년 지원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 - 소비행태와 동독제품 - 동독지역 성공의 비밀	해제번역
'12	특임 장관		Bd 27(신연방주특임관) • 신연방주의 건설 관련 정당 및 의회의 질의-제안 관련 문서 연방정부의 답변 및 연례보고서 등	해제번역
'10 '12	내무부	치안 헌법수호 주민행정 이민정책 직원인수 체육진흥 정치교육 조달	Bd 15(사법 및 행정) • 행정개혁 - 베를린 행정통합, 신연방주 행정개혁, 행정재건 등 • 행정법 - 재산권, 행정소송법 • 인사행정 - 신연방주지역 공무원법 도입문제 - 국가간부에서 법치국가 공무원으로의 변모 - 임금법의 과도규정 등	전문번역
			Bd 28(내무부) • 헌법과 연방주의 개혁 • 행정체계 구축 • 연방주간 자매결연과 행정지원 • 공공부문 인력 • 치안과 경찰	해제번역
			Bd 3(군과 경찰) • 경찰행정청 통합 • 경찰인력의 재교육 승계 또는 청산	전문번역
			Bd 4(통일된 도시에서의 경찰) • 베를린 경찰 통합사례	전문번역

'10 '12 2015	법무부	입법정책 판검사임명 동독시절 과거 청산 위헌법률심사	Bd 2(과거청산) • 슈타지 문서관리국의 제9차 활동보고서 • 슈타지 문서에 관한 법 관련 지침 •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의 안내-열람-복사본의 반출 신청에 관한 안내 • 사통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법 • 공소시효 연장법 • 1989년 가을 이후 사통당 정권의 형법적 청산과 그 한계 • 동독 부당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 신연방주 내 반법치적 형사소추건 희생자의 복권 및 보상에 관한 법 • 신연방주 내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폐기 및 그에 따른 후속청구권에 관한 법률 • 신연방주 내 정치적 박해 희생자의 직업적 불이익 보상에 관한 법 •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보고서 및 법, 정관 • 베를린 호엔쇤하우젠 기념지 재단	전체번역
			Bd 15(사법 및 행정) • 통일조약 3장 • 서독법의 동독지역 이전시 적용기준 • 국가협약을 토대로 하는 사법분야의 법개정 • 효력이 지속되는 구동독법의 확정과 개정관련 연방 법무부의 신연방주 지원 • 독일통일이 연방 법무부의 책임영역에 미치는 영향 • 동독법원의 형사판결 검증을 위한 독립위원회 • 편입지역 내 사법통일을 위한 법 • 통일후 사법인력 구축 • 변호사 허가, 판검사 인수 • 동독출신 판검사 재교육 • 사법보좌관법 • 신연방주 법치국가 구축을 위해 지출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 • 민법통합	전체번역
			BB (브란덴부르크) – 파일10, Nr.14~16 문서 • 브란덴부르크주 양케이트위원회 • 슈타지 조사위원회 • 슈톨페 조사위원회	미번역
			Bd 24 (브란덴부르크주의 과거청산) • 공산주의 독재 청산을 위한 주특사 결정 • 국가안전부 연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원법 개정 • 정치적 인물들의 국가안전부 연루 배경 • 사통당 독재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양케이트 위원회 • 사통당 독재와의 관련 여부 검증 • 잘츠기터 중앙조사처	해제번역

'10 '14	재무부	조세 예산 유럽재정정책 신탁관리청	Bd 00(통일비용) - 독일통일 비용(G.리터), - 장벽붕괴 20년의 동독(K슈뢰더) - 이전지출과 동독의 GDP(H.레만, U.루드비히, J.라그니츠) - 통일의 가격은 얼마인가(J.라그니츠) - 신연방주에 실시된 이전지출과 성과(독일경제연구소) - 독일통일비용을 위한 투쟁(R.짜다) - 통합과정의 연방적 재정분쟁과 평가(H.메딩) - 독일통일 비용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특별기금(H.토포트) - 독일통일 재정조달 - 부채부담관리(F.친스마이스터) - 통독연대협약: 조정이필요하다.(J.라그니츠) - 독일통일 기금설치법 - 상속부채 변제기금 설치법 - 부가가치세 수입분배기준	전문번역
			Bd 12(통일비용과 재정정책) - 통일의 경제적 비용, - 서→동독으로의 이전지출 개요 및 성과 1970~2000 독일의 국내총생산, 소비, 직업활동 - 공공재정의 수요와 부채 - 독일통일에 관한 국민경제적 관점 - 구동독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보고('03) - 화폐전환 이후 독일에서의 화폐 - 독일통일의 재원마련 - 신연방주에 대한 발전지원 10개항 프로그램 - 구동독지역에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적응단계 진행	전문번역
			Bd 14(신탁관리청과 구동독지역 재건) - 신탁관리법 - 고용창출 조치의 조직적 준비 및 실행을 위한 제안 - 호텔 및 휴양시설의 사유화 - 지방자치화 - 사회복지계획을 위한 기본원칙 1954 협정에 근거한 추가 연금관련 기본 원칙 -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업무 - 신탁관리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안내서 - 중소기업을 위한 신탁관리청의 이니셔티브 1991년초까지의 기업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침 - 신탁관리청의 조직 - 신탁관리청의 과제, 기능 및 방식 - 기업민영화를 위한 기본방침	전문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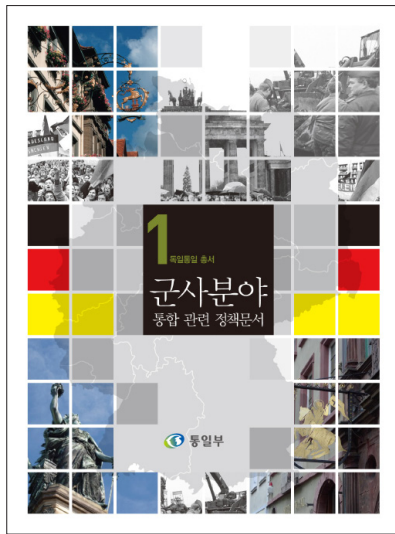
'10 '14	재무부	조세 예산 유럽재정정책 신탁관리청	Bd 16(재무부) • '89년 11월 6일 차관회담 • 루데비히 국장의 동독 재정지원책 보고서 • '90년 2월 7일 연방총리실 자료 • 경제개혁을 동반한 화폐통합 제안 • 중앙은행위원회의 결정 • 경제 및 화폐통합의 준비작업 • 재무장관-사민당대표와의 회담 • 동독의 연방가입과 헌법개정 고려사항 • 통일조약,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 체결에 관한 계약	전문번역
'10	농식품부	농업, 식품위생, 소비자보호	Bd 13(농업) • 키르히하일리겐 농업생산 조합작물 생산부의 문제 보고 • 경제, 통화, 사회통합의 준비 및 실행에 있어 농식품 산업의 과제 • 수의사 관련 농업 장관의 보고 • 농업 및 환경위원회의 농업분야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 권고 • 동독농업의 적응위기 • 작물보호 및 종자업 관련 통일조약의 언급사항 • 동독농업의 사회적 및 생태적 시장경제에 대한 구조적 적응에 관한 법률 • 농업의 구조 및 사회적 조정 촉진법 • 농업 및 식품관련법 규정 • 동독 농업집단사업장법 • 임야반환과 임업사업장 청산을 위한 신탁청과 신연방 주 합의 • 인민재산 사용금지 규제의 철회 • 보상 및 조정급부법 • 구인민토지의 임대에 관한 신탁원칙 변경을 위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 • 농업구채무법 • 신연방주의 재산권 분쟁과 농업의 구조전환 • 농촌지역에서의 구동독지역 재건('03) • 중부 및 동부유럽 농업발전연구소의 보고서('05) • 신연방주에서의 경지정리 및 농업	전문번역
'10 '14	노동 사회부 *내용은 대부분 노동조합 관련사항	실업보험 연금 직업교육 등 고용정책	Bd 9(노동조합) • FDGB측과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 FDGB조합원 통계 • 동서독 금속노조간의 긴급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건설-광석-토지노조 연방지도부와 건설-목재 중앙지 도부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협정 • 동독 헌법개정을 위한 FDGB의 초안 • 동독에 관한 공무, 운수, 교통조합 중앙위원회의 결정 • 동독노조들의 권리에 관한 법 • 노조단일화를 위한 과도기 기간의 노조 구조	전문번역

'10 '14	국방부	인민군 해체 및 군사통합, 나토정책	Bd 3(국방 I) • 국가시민활동 관련 기관해체에 관한 명령 • 독일민주공화국 인민군대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군 탈퇴에 관한 의정서 • 연방국방부 조직위원장 호퍼의 동독군축국방부와의 공동지도 구조 구축을 위한 기본안 • 연방군인과 인민군 소속원 간의 접촉에 관한 가이드라인 • 연락 지도부 설치 관련 서신 • 인민군 추가 축소조치에 관한 군축국방부 장관 명령 • 전인민군 군인들의 연방군 편입 • 전인민군 잉여물자 처리 종결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원문 일부번역
			Bd 26(국방 II) • 병력통합의 원칙 • 동독군 전역자 및 연방군 복무희망자 처리과정 및 결과 • 동독군 출신 군무원 처리과정 및 결과 • 동독군 물자처리 위원회, 물자 및 장비 처리 현황 • 동독군 시설처리 및 통합 현황 • 군사시설 환경오염과 처리현황 • 대량살상무기의 처리 • 무기와 탄약의 처리 • 동독군 인수 관련 행정지침 • 주동독 소련군 관련 항 • 동독의 난민에 대한 서독군의 대응조치 • 통일 후 병역제도	해제번역
'12	교통부 *환경 및 도시계획 관련사항 포함	교통, 관광	Bd 29(교통부) • 소유권 • 주택건설과 주택수당 • 도시개량 • 농촌개량 • 사회 기반시설 발전 • 통일독일의 수도 • 산업지원 • 수자원 • 환경정화 • 경계지역 • 연관체계의 통합	해제번역
'10	환경부	그린벨트	Bd 19(환경) • 기본입장 및 법조문 – 통일조약에 대한 인민회의 환경위원회의 입장표명 – 환경기초법, 장애제거법,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기준 • 오염지대 정화 – 일반, 갈탄, 원자력 발전소 등 • 자연보호, 그린벨트 – 독일 통일 5주년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학적 개선-발전보고서 – 신연방주에서의 환경보호: 통일 10주년 결산	전문번역

'10 2015	교육 학술부	학술연구진흥, 연구소 지원	Bd 18(교육) • 신연방주에서의 교육개혁 • 교사의 자격인정과 급여동등화 • 유치원 교육 • 직업교육 및 지식이전	전문번역
'10 2014	보건부	의료체계, 의료보험, 국민건강예방, 요양	d 18(교육) • 연금이관법을 통합 연금법 통합 • 사회보험공단 이관조직 및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 • 동독사회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 •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일반지역 의료보험조합(AOK) 구축 •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과제 및 지식 • 독일사무근로자의료보험(DAK)의 활동 및 보고서	해제번역
	외무부	외교정책 EU정책 영사업무 국제문화활동	—	
'13	경제부	산업 경제정책	33권	
2012	도시 건설부	동부도시 재건프로그램 지역홍보관광	—	
	체신부	우편, 전신 전화, 통신	—	
2015	연구 기술부		—	
2013	가족 노인부		32권	
2013	여성 청소년부		34권	
2015	문화부			
2012	과도기 동독법		25권, 과도기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도입 개정한 법률과 특별법 모음집	
	경제 협력부		—	

독일통일 총서 시리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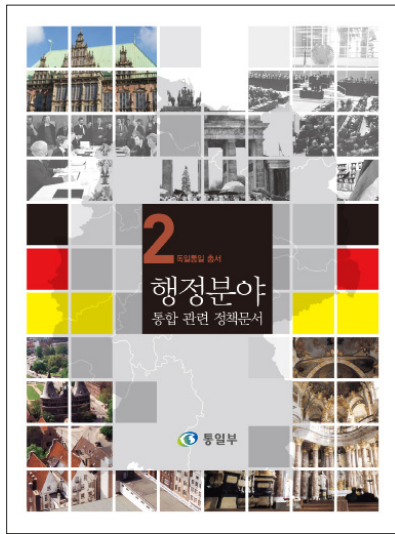
통일부



II	동서독 군사통합 단계별 과정	
	들어가며	76
	제1장 개혁기(1989년 10월-1990년 3월, 1990년 4월-7월)	80
	제1절 인민군 조직의 특성	80
	제2절 제반조건	88
	제3절 동독 인민군과 서독 연방군 간의 상이한 기대와 평가	92
	제2장 준비기(1990년 7월-10월)	96
	제1절 변혁의 물결과 자체 개혁을 위한 노력	96
	제2절 통일독일의 나토 회원국 지위	105
	제3절 인민군과 연방군의 통합	110
	제4절 외국과 체결된 계약의 파기	123
	제5절 탄약과 무기의 안전한 보관	127
	제3장 인수기(1990년 10월-1992년 말)	130
	제1절 인민군의 해고	131
	제2절 연방군으로의 인수	135
	제3절 연방군에서의 계속고용	137
	제4절 연방군 잔류문제와 연금문제	140
	제4장 구조조정기(1991년-1995년)	144
	제1절 군사장비와 시설	145
	제2절 통일의 완성을 위한 연방군의 노력	147
	제3절 신연방주의 고용주로서의 연방군	150
	제4절 인프라	150
	제5장 휴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1993년-현재)	152

I	독일통일에 따른 군사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제1장 서문	10
	제1절 국방총서 발간의 배경	10
	제2절 국방총서 발간의 목적	12
	제3절 국방총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4
	제2장 군사통합의 기획과 준비 및 애로사항	16
	제1절 동독급변사태의 발생	16
	제2절 군사통합 논의 시작과 전개과정	17
	제3절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 및 기구 설치	23
	제4절 애로사항	27
	제3장 병력통합	31
	제1절 구 동독군을 통일독일 연방군으로 인수하는 법적 근거	31
	제2절 통일 직전 구 동독군의 병력 현황과 부대개편 계획	37
	제3절 구 동독군의 편입과정	39
	제4장 무기 및 장비 통합	43
	제1절 구 동독군으로부터 인수한 무기과 장비의 규모	43
	제2절 무기와 장비의 분류 및 평가기준과 보관	44
	제3절 무기 및 장비의 처리 현황	47
	제5장 기구와 조직 및 시설통합	49
	제1절 기구와 조직 통합	49
	제2절 시설통합	50
	제6장 교육통합	52
	제1절 교육통합의 목표	52
	제2절 구 동독군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식	54
	제7장 맺음말 : 교훈과 시사점	58
	부록 1: 독일통일 및 군사통합 연대표	65
	부록 2: 통일조약 부록 1, 제19장, 업무영역 B: 군인법, 제2절	68

III	통일독일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동서독 관계자들의 강연 및 인터뷰	158
	동독 군축국방부와 인민군 해체	159
	연방군과 동부부흥	173
	인터뷰 - 롤프 옥켄(Rolf Th. Ocken) 장군	214
	인터뷰 - 페터 톰슨 (Peter Thomsen) 전 인민군 육군 중령	225
	문서목록	227
	문서 요약	256
	1. 개혁기(자료번호 1~38)	256
	2. 준비기(자료번호 39~95)	282
	3. 인수기(자료번호 96~102)	318
	4. 구조조정기(자료번호 103~112)	324
	5. 휴유증 등 제반문제 처리기(자료번호 113~300)	330



I 독일통일에 따른 행정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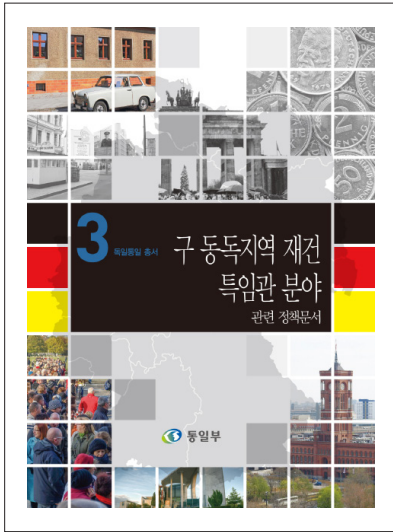
제1장 동서독 행정통합의 성격 및 특징	10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비교	14
제1절 행정의 기본 원칙	14
제2절 행정의 구조	23
제3절 관료제	37
제3장 동서독 행정통합의 과정과 내용	43
제1절 구 동독지역 5개 주(州) 부활 및 독일연방공화국 편입	45
제2절 신연방주 정부조직 및 행정기관의 구축	55
제3절 구 동독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60
제4절 구 동독지역 지방행정구역 개편	67
제5절 구 동서독 관료제 통합	71
제6절 신연방주에 대한 인력지원	88
제7절 구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101
제4장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8

II 통일독일의 행정구조 통합과 행정인력 수급

들어가며	120
제1장 1989~1990년 과도기 통일준비	122
제1절 통일방안	122
제2절 통일조약	130
제2장 행정구조의 통일	134
제1절 이질적 행정구역제도의 통일을 위한 준비	135
제2절 통일조약과 행정	151
제3절 연방주의에 기초한 행정구조의 도입	155
제4절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167
제5절 제2차 행정제도 구축과 그 영향	178
제3장 행정인력의 수급	181
제1절 서독에 의한 지원	182
제2절 신연방주 국가기구 종사자들의 공무원 임명을 위한 선별과 교육	198
제3절 임금/급여의 격차	208
제4장 결어	213

III 통일독일 행정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218
문서 요약	236
1. 통일조약(문서번호 1~36)	236
2. 행정구조의 통일(문서번호 37~104)	265
3. 행정인력의 수급(문서번호 105~161)	311



I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특징

들어가며	92
제1장 독일 연방정부의 특임관 제도	95
제1절 통일과 내독관계부 그리고 연방수상실의 역할	97
제2절 특임관 제도의 도입	102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 업무의 특성	104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 특임관의 과제	107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5
제2장 역대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인터뷰	118
제1절 요하네스 루데비히	118
제2절 볼프 슈바니츠	133
제3절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140
제4절 인프리트 슈틀페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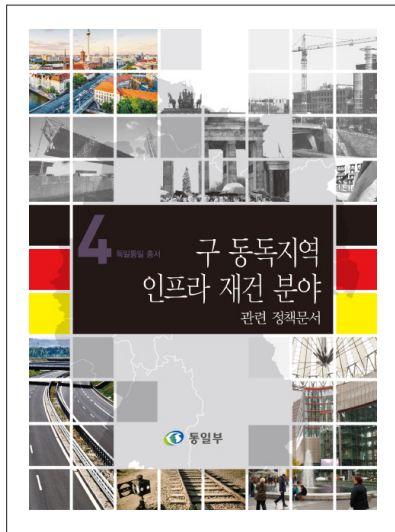
I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와 재건 현황

제1장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도입	10
제2장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의 업무와 과제	13
제1절 동, 서독 관계 담당 부서	13
제2절 구 동독지역 재건 담당 특임관 제도의 필요성	15
제3절 특임관의 개념 및 종류	17
제4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제도 개요	19
제5절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과제	24
정치적 통합과 연방정부 각 부처(部處) 간 업무조정	24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젝트의 진행	26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작성	28
구 동독지역 재건 재정지원 조달	29
제6절 독일 통일 비용	36
제3장 구 동독지역 재건과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39
제1절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39
구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의 필요성	39
공동체 이니셔티브(Gemeinschaftsinitiative) 제안	41
제2절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	46
연례보고서 제출 동기	46
1997년 20주 매년 연례보고서 개요	49
연례보고서 정리	57
제3절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각 정당의 제안과 논쟁	58
정당들의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 촉진 요구	59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정부 출범	61
민사당(FDS)의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의 활동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62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독일 통일 10년 보고서	64
기민당(CDU)/기사당(CSU) :	
2015~현대 독일연방을 위한 구 동독지역 재건 제안	67
자민당(FDP) : 구 동독지역 재건 10개 프로그램과 구 동독지역을	
첨단지역으로 변화시켜줄 제안	67
사민당(SPD)/녹색당(Die Grünen) : 구 동독지역에 지속적 성장을 보장제안	70
좌파당(Die Linke)의 구 동독지역 재건에 대한 질의	72
독일 통일 현황 2011년 연례보고서에 대한 연방의회 총회 토론	82
제4장 특임관 제도와 구 동독지역 재건 계획의 시사점	83

III 구 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정책문서

문서 목록	174
문서 요약	187
1. 인터뷰(문서번호 1, II)	187
2. 문서요약(문서번호 1~144)	189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I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과 동부 재건 프로젝트

들어가며	124
제1장 문제점 및 배경	128
제1절 구 채무와 소유권의 문제	129
제2절 수입과 지출의 문제	136
제3절 철도와 우편	137
제2장 동부 도시재건	139
제1절 동부 도시재건 배경	139
제2절 연방정부-연방주 공동사업 "동부 도시재건"	143
제3장 동부 재건 프로젝트	148
제1절 동부 재건 사업의 조정, 계획 그리고 협력	148
제2절 동부 재건 사업의 경과보고서와 평가서	154
제3절 사업 준비단계에서의 예측과 잘못된 계획	158
제4절 동부 재건 사업의 전망	160
제4장 결어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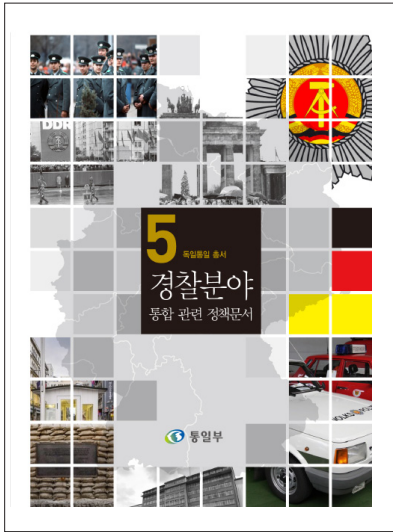
I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인프라 재건의 의미	12
제1절 논의의 필요성과 의미	12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4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국토관리의 특징 비교	19
제1절 분단기간 사회주의 동독의 국토발전 과정	19
제2절 사회주의 동독 국토계획체계의 특징	22
제3장 동서독 인프라 재건의 과정과 내용	25
제1절 통일 당시의 동서독 인프라 상황	25
제2절 통일과정에서 결정된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	28
제3절 통일 이후 독일 인프라 재건의 주요 과제	31
1. 소유권 정립 및 토지주택의 사유화	31
2. 주택개발 및 주거지원	44
3. 도시정비	51
4. 농촌정비	62
5. 교통 인프라 개발	64
6. 통일 수도	70
7. 산업입지 개발	77
8. 수자원	87
9. 환경개선	89
10. 접경지역	94
11. 제도통합	9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03
제1절 인프라 재건의 성과와 과제	10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12

III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70
문서 요약	182
1. 소유권(문서번호 1a~11)	182
2. 추가 자료(문서번호 81~100)	191
3. 도시 개량(문서번호 22~25)	197
4. 농촌지역 개량(문서번호 26~28)	201
5. 사회기반시설 발전(문서번호 29~39)	204
6. 통일독일의 수도(문서번호 40~48)	212
7. 산업지원(문서번호 49~53)	219
8. 수자원(문서번호 54~55)	224
9. 환경정화(문서번호 56~71)	226
10. 경계지역(문서번호 72~76)	240
11. 연관체계의 통합(문서번호 77~80)	245
12. 추가 자료(문서번호 81~100)	249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통일과 치안

들어가며 120

제1장 평화적 혁명 이후 개혁적 과도기의 동독의 인민경찰	122
제1절 개혁적 과도기의 유일한 치안유지 기관	123
제2절 슈타지의 해체와 인민경찰	126
제3절 동서독 국경 철거와 안전보장	127
제4절 범죄예방과 퇴치 업무	128

제2장 베를린 경찰의 통합과정	129
제1절 베를린 경찰통합 진행연보	129
제2절 사전작업	131
제3절 통합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의 구성	132
제4절 통합의 완성: 1990년 10월 1일	135
제5절 정권 범죄 및 통일 관련 범죄	136

제3장 동베를린 인민경찰의 재임용 문제	137
-----------------------	-----

III 경찰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52

문서 요약	160
1. 보고와 현황(문서번호 1~16)	160
2. 공문(문서번호 17~18)	175
3. 업무지시(문서번호 19~35)	178
4. 양식, 설문지 그리고 견본(문서번호 36~40)	196
5. 보도 공고와 신문 기사(문서번호 41~51)	201
6. 회의록(문서번호 52~61)	211
7. 발표문(문서번호 62~63)	222

독일이어 원문 자료(CD 수록)

I 동서독 경찰통합의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 문	12
제1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배경	12
제2절 경찰분야 총서발간의 목적	14
제3절 경찰분야 총서의 구성과 주요내용	14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체제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서독의 경찰체제	17
1. 개관	17
2. 각 주의 경찰기관	18
3. 연방경찰기관	18
제3절 동독의 경찰체제	21
1. 개관	21
2. 인민경찰(Volkspolizei)	23
3.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Stasi)	25
4. 국경경비대(Grenztruppe)	26
제4절 소결: 동서독 경찰체제의 비교	27

제3장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지역의 치안 및 경찰의 대응	29
제1절 서설	29
제2절 동독지역 치안상황 개관	29
제3절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경찰의 대응	33
1. 베를린 장벽 붕괴시까지 서독경찰의 역할	33
2.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서독 경찰의 대응	34

제4장 동서독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37
제1절 독일통일의 논의	37
제2절 행정체제의 통합	39
1. 행정통합의 기본원칙	39
2. 연방제의 부활	39
3. 동독지역 공무원의 인수	41
제3절 경찰통합을 위한 논의와 준비	42
1. 동서독 경찰 간 접촉과 교류	43
2.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과 준비	45
3. 경찰통합의 준비활동으로서 동독 경찰의 노력과 조직개편	52

제5장 동서독 경찰의 통합	58
제1절 서설	58
제2절 통일독일의 치안상황	58
1. 범죄의 발생추이	59
2. 범죄피해의 신고수준	61
제3절 신연방주(州)의 경찰통합	62
1. 경찰권의 귀속	62
2. 새로운 경찰법 제정	63
3. 신연방 지역에서의 경찰조직의 재건	63
제4절 베를린 경찰의 통합	71
1. 경찰통합의 기본원칙	71
2. 경찰통합의 추진	72
제5절 구 동독 인민경찰의 활용	84
1. 구 동독 인민경찰의 재임용	84
2. 구 동독 인민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재교육	98
제6절 경찰 통합상 문제점	101

제6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5
제1절 서설	105
제2절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5
1. 동서독 경찰 통합의 의미	105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7
제3절 남북한 경찰통합을 대비한 정책적 제언	109
1.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109
2. 경찰통합의 준비와 기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110
3. 북한지역 자원체계의 구축	111
4. 북한 인민경찰의 흡수·활용	111



II 문서를 통해서 본 통일과 정당

들어가며 118

제1장 1989년 격변기 동독 정당의 변화 121

제1절 동독의 정당구조 121

제2절 1989년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통당의 대응 122

제3절 신생 정당의 등장 130

제4절 동독 사회민주주의당(SDP)의 창당 133

제5절 개혁기 정당과 시민단체의 재정 136

제2장 사통당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재탄생? 140

제3장 민주사회당의 부활과 좌파당으로의 변신 148

제1절 선거를 통한 복권 148

제2절 좌파당의 창당 152

제3절 민사당-좌파당의 과제와 목표 153

제4절 민주사회당과 새로운 좌파당 내의 당파와 계파 156

제5절 민사당/좌파당의 전략과 전술 158

제6절 좌파당과 2009년 이후 변화된 환경 160

I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정당체계의 변모와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2

제2장 통일 전 동서독 정당체제 15

제1절 동독의 정당체제 15

1. 사회주의통일당 15

2. 위성정당 17

3. 위성정당의 역할 25

4. 동독의 대중단체 27

제2절 서독의 정당체제 29

1. 전후 서독의 정당 설립 29

2. 서독 정당체계의 특징 31

제3장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체계의 변모 33

제1절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의 정치지형 33

제2절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의 정치지형-원탁회의 36

제3절 신정치세력의 등장 38

제4절 동독정당의 개편 42

제5절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당의 통합 48

1. 정당연합과 인민의회 선거 48

2. 동서독 정당의 통합 56

3. 사회주의통일당의 변화 64

4. 동서독 정당 통합의 특징 66

제4장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70

제1절 통일 후 동서독 정당지형 변모과정 70

1. 정당 지형의 변화: 연방하원 선거 결과 71

2. 민사당의 형성과 발전 73

3. 정당지형의 변화 요인 83

제2절 정당통합 이후 정당체계의 변화 88

1. 신생 정당(민사당)의 정치적 기반 확보 성공 88

2. 기성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증가 89

제3절 정당통합에 대한 평가 91

1. 총평: 민주적 정당체계의 안정적 유지 91

2. 긍정적인 측면: 성공적인 정당통합 92

3. 부정적인 측면: 서독 주도의 통합방식으로 인한 문제 94

제5장 한국에의 시사점 108

제1절 통일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당 간 통합 108

제2절 통일 후 정당체계 변모 110

III 정당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66

문서 요약 180

문서요약(문서번호 1~84) 180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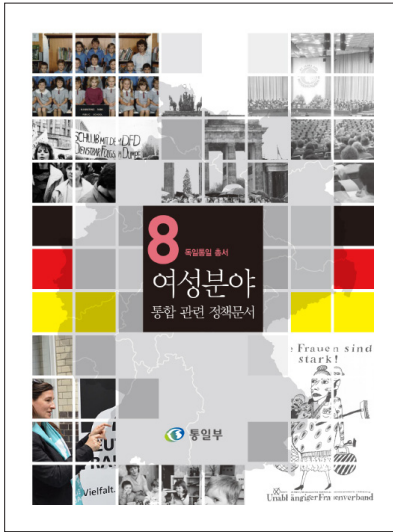


II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본 통일과 과거청산

들어가며	114
제1장 과거청산과 비밀경찰 슈타지	115
제1절 동독 국가안전부 슈타지(Stasi) 문서	115
제2절 슈타지 문서법과 슈타지 문서관리국	118
제3절 슈타지 문서의 활용	121
제2장 과거청산의 이중성 문제	123
제1절 브란덴부르크 전 총리 만프레드 슈톨페를 둘러싼 논쟁	124
제2절 악셀 힐퍼트 케이스	127
제3장 화해 중심의 과거청산-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	130
제1절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노선" (Sonderweg von Brandenburg)	130
제2절 지속되는 "과거" 논쟁과 양케이트 위원회	132
제3절 주정부의 대응	135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가 독일의 지속적인 과거청산에 미친 영향	136
제4장 기타 기관들	138
제1절 연방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독재청산재단)	138
제2절 잘츠기터 "국경 폭력행위 기록 및 해명을 위한 주(州)법무관리 중앙등록처"	139
*부록-2013년 연방정부 과거청산 보고서	140

I 동독 사회주의 독재청산의 현황과 과제

들어가며	10
제1장 동독 사회주의 독재의 사법적 청산	14
제1절 사법청산의 기준	14
제2절 사법청산의 전개-국경 탈주자 살상 사건을 중심으로	19
1. 정권 범죄 특별수사부의 설립	19
2. 국경수비대 재판	20
3. 국방위원회 위원 재판	23
4. 정치국 위원 재판	26
제3절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의 증거 기록	30
제4절 사법청산의 의미와 한계	33
제2장 국가안전부 문서 공개와 과거청산	36
제1절 문서 확보와 공개	36
제2절 문서를 토대로 한 새로운 과거청산 시도	43
1. 개인적 자료의 청산	43
2. 사회적 자료의 청산	46
3. 문서 공개에 대한 반대와 저항	49
제3절 동독만의 문제에서 전 독일적 문제로	61
제4절 브란덴부르크주의 뒤늦은 슈타지 청산	64
제3장 독일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의 과거청산 활동	72
제4장 피해자들의 복권과 보상	79
제5장 사회문화적 청산	88
제1절 학술적 청산	88
제2절 공공 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계몽 활동	90
제3절 박물관과 추모지를 통한 기억화	94
제4절 시대적 증인들의 대화를 통한 생생 역사 교육	97
제5절 청소년 대상 교육의 강화	98
제6장 맺음말	101
문서 목록	154
문서 요약	174
문서요약(문서번호 1~116)	17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독일통일과 여성통합 과정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2
제2장 통일 이전의 동독과 서독의 여성실태	16
제1절 일과 가정, 육아의 양립가능성: 동독과 서독의 이상적인 가족형태	16
1. 동독	17
2. 서독	20
제2절 정치적 대표성 및 경제적 활동	22
1. 정치적 대표성	22
2. 경제활동	24
제3장 독일통일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활동과 동독 인민의 회 및 정부의 활동	26
제1절 여성단체들의 활동	27
1. 보랏빛 공세(Lila Offensive)	28
2. 독립여성연합(Unabhängiger Frauenverband)	31
3. 서독 여성단체들의 활동	33
제4장 독일통일 이후 여성과 관련된 통일조약의 실현과정	47
제1절 연방정부 내 여성부서 신설과 역할	47
제2절 여성 관련 법률 제·개정	49
1. 기본법의 개정	49
2. 제2차 남녀평등실행법(Zweites Gleichberechtigungsgesetz)	52
3. 임신부 및 가족지원법(1992):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54
4. 임신부 및 가족지원법(1992/1995): 형법상 낙태 관련 규정	56
제5장 통합과정에서 동독여성이 겪은 통일후유증과 그 극복방안	69
제1절 동독여성들이 겪은 통일 후의 일자리부족 현상	70
1. 동독지역의 실업의 원인과 실업대책 및 연금제도 도입	70
2. 동독여성들의 실업상황과 대응자세	76
3. 여성 연령층에 따른 통일의 효과	80
제2절 통일후유증 극복방안과 동서독 통합과 발전과정	84
제6장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여성분야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	88
제1절 북한여성실태	88
제2절 독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93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여성정책

들어가며	106
제1장 여성 관련 정부 부처	108
제2장 동서독여성의 상이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	110
제1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114
제2절 독일통일이 신연방지역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정적 평가	118
제3절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치논의에 영향을 준 요소들: 통일 직후의 일반적인 실망, 분노, 오해와 생존의 두려움 등	122
제3장 낙태법에 대한 논의(형사법 218조)	125
제1절 낙태에 관한 동서독의 상이한 규정	125
제2절 통일조약의 낙태규정에 관한 타협안	127
제3절 1992년까지 진행된 낙태규정에 관한 논의	130
제4절 연방의회 각 정당이 제출한 새로운 낙태법안	132
제4장 여성의 연금과 실업수당의 산출	138
제5장 신연방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화	140
제2절 통일과정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동독의 공식기구들	35
1. 원탁회의	35
2. 1990년 자유선거 이후 제10대 동독 인민의회와 메지예르 내각: 가족여성위원회와 여성가족부	38
제3절 통일조약에서 명시된 여성 관련 주제	43
제4절 평가	46



여성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46
문서 요약	154
문서요약(문서번호 1~49)	154
독일이 원문 자료(CD 수록)	



I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변동과 가족정책의 변화

제1장 서론	12
제1절 통일 연방정부의 가족에 대한 이해	12
제2절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	14
제2장 인구사회학적 고찰	16
제1절 인구의 대량 이동	16
제2절 출산율 저하	19
제3절 고령화의 가속	22
제4절 노동력 감소	23
제3장 노동시장구조 및 경제활동, 소득의 변화	25
제1절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26
1.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	27
2. 노동시간	28
3. 임금	30
제2절 실업률의 증가	32
제3절 여성노동의 구조변동	35
1.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40
2. 직업교육	42
제4절 구 동서독지역 간 소득격차	44
제4장 통일 후 독일의 가족구조	47
제1절 가족의 가치와 기능	47
제2절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변화	52
제3절 가족구조의 변화	54
1. 비혼 가구의 증가	54
2. 이혼율의 증가	55
3. 가족 내 성별 노동분업과 일-가족 양립	57
4. 확대된 가족개념과 동성애 가구의 증가	59
5.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한부모 가족'의 증가	60

제4절 가족에 대한 정치, 사회적 요구 및 조치	62
1. 가족과 수입	62
2. 가족지원 및 상담	68
3. 지역과 지방 차원의 가족정책	71
4. 가족법	73
5. 가족과 생업	78
6. 가족과 교육	85
7. 가족과 거주	90
8. 가족과 건강	96

제5장 통일 후 독일 가족구조의 변화가 한국 통일에 주는 시사점	111
제1절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	111
제2절 현 북한지역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현상, 고령화, 빈곤화	111
제3절 통일비용의 부담	111
제4절 가족구조의 변동	113
제5절 통합적 가족지원 정책	113

제6장 통일 전후 독일의 가족정책의 변화과정: 아동돌봄을 중심으로	115
제1절 아동돌봄정책의 통합에 대한 정책적 요구들	116
1. 통일 전 양국의 가족정책의 원칙에 대한 비교	116
2. 통일과정에서 DDR의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들과 법적인 변화	120
제2절 통일 전 양국의 아동돌봄정책의 비교	125
1. 아동돌봄 관련 수당정책의 비교	126
2. 보육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 정책의 비교	128
3. 양국 정책에 대한 평가	131
4. BRD의 정책과 통합하기 위한 DDR 정책의 경과조치적 수정	133
제3절 통일 이후의 독일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144
1. 아동돌봄정책의 새로운 방향	144
2. 최근의 세부 정책적 내용	145
제4절 독일 아동돌봄정책의 성과와 한계	153
1. 연관과정으로 인식되는 가족정책의 문제(Querschnittscharakter)	154
2. 중앙조정이 어려운 문제	155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의 한계	155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가족

들어가며	162
제1장 1989년 평화적 혁명을 전후로 본 동독의 가족개념	163
제2장 개혁과도기에 동독정부가 추진한 가족정책의 개혁과 현황보고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0월)	167
제3장 통일 이후의 새로운 경험과 구체제 하의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	170
제4장 책임소재에 관한 논란과 새로운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	182

III 가족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90
문서 요약	195
문서요약(문서번호 1~36)	195